|  |  |  |
| --- | --- | --- |
| **내·외자기업의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 허용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 문시함[2015]576호각 성·자치구·직할시 문화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문화광파전시국, 시짱(西藏)자치구·베이징(北京)시·톈진(天津)시·상하이시·충칭시 문화시장(종합)행정집법총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복제 가능한 개혁시범사업 경험 보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의 요구에 따라 문화부는 '내외자기업의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을 허용하고 문화부서의 내용심사 후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개혁시범사업의 경험을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전국에서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1. 이 통지에서 오락게임설비라 함은 전문설비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내용과 게임과정을 제공하는 전자·기계류 장치를 지칭하며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게임기, TV수신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 및 휴대용 전자게임기 등을 포함하되 수출판매용 오락게임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통지에서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업에 종사하는 내·외자기업이라 함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에 등기하였고 그 경영범위에 오락게임설비의 생산 또는 유통이 포함된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을 지칭한다.2. 기업이 자주적 지적재산권 보유, 민족정신 구현, 건전한 내용의 지능개발형·교육형·체감형·운동형 오락게임설비를 연구개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오락장소 관리조례> 제13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포함하였거나 안전 우환이 존재하거나 동전·포인트·구슬 반환 등 도박 기능이 있는 오락게임설비를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3.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오락게임설비의 내용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각 성(구·시) 문화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정부정보 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사비준 서비스 창구와 관련 정무(政務) 사이트에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의 법규의거, 실시기관, 심사조건, 심사절차, 심사시한, 연락처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정책자문 서비스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오락게임설비의 생산·유통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내용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를 발급하고 문화부에 보고하여 통일적으로 사회에 공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심사절차는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관리방법>(첨부 참조)에 따른다.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를 발급받은 오락게임설비는 타지역 문화행정부서의 중복적인 심사가 필요 없이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문화·공안 등 부서, 업계 전문가, 업계협회로 구성된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전문가팀을 설립할 수 있고 내용 판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팀이 심사건의를 제안하거나 문화부에 보고하여 재심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재심사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화부는 더 이상 <오락게임시장 진입허가 기계모델·기계종류 지도목록>을 발표하지 아니하며 기존 <오락게임시장 진입허가 기계모델·기계종류 지도목록>은 계속 유효하다.4. 오락게임설비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는 내부 내용심사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심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오락게임설비의 생산·유통업에 종사하는 내·외자기업은 매년마다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직전연도의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도 보고서의 내용에는 공상행정부서에 제출하는 내용 이외에 판매수량도 포함해야 한다. 내부 내용심사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에 따라 연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해당 기업을 문화시장 경영이상(異常) 명록에 추가할 수 있다. 기업이 내용심사를 거치지 않은 오락게임설비를 국내에서 무단 판매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문화시장 종합집법기구가 시정을 명하며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급 문환행정부서가 해당 기업을 문화시장 경영이상(異常) 명록에 추가한다. 오락게임설비가 <오락장소 관리장소> 제13조에 규정한 금지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그를 문화시장 블랙 리스트에 추가한다.5.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이 통지의 취지와 본 지역, 본 부서의 현황과 결부시켜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문화·공상·공안 등 부서로 구성된 업무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정책의 홍보와 해석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책의 실현을 촉진해야 한다. 실시 과정에서 중요한 상황과 문제에 봉착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문화부는 적절한 시기에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관련 정책의 실현 상황을 감독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첨부 :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관리방법문화부2015년 6월 24일첨부**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관리방법**1. 오락게임설비의 내용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락장소 관리조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복제 가능한 개혁시범사업 경험 보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사이버 문화관리 잠행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2. 이 방법에서 오락게임설비라 함은 전문설비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내용과 게임과정을 제공하는 전자·기계류 장치를 지칭하며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게임기, TV수신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 및 휴대용 전자게임기 등을 포함하되 수출판매용 오락게임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기업이 자주적 지적재산권 보유, 민족정신 구현, 건전한 내용의 지능개발형·교육형·체감형·운동형 오락게임설비를 연구개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4.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오락게임설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1)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내용;(2) 국가의 통일, 주권 또는 영토의 완전성을 위협하는 내용;(3)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명예,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4)민족원한, 민족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의 감정에 상처를 주거나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침해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5)국가의 종교정책을 어기고 사교(邪敎),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6)음란, 도박, 폭력 및 마약 관련 범죄활동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7)사회도덕과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저촉되는 내용;(8)타인을 모욕, 훼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9)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5. 국내 시장을 위해 생산 및 유통되는 오락게임설비의 외관, 게임내용, 게임방법에 대한 설명은 중국의 통용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동전·포인트·구슬 반환 등 도박 기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6. 국내에서 법에 따라 등록하였고 독립법인 자격이 있는 오락게임설비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는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주관부서에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신청표>;(2)기업영업집조 복사본, 경영범위에 오락게임설비의 생산 또는 유통이 포함되어야 한다;(3)오락게임설비에 설치된 게임내용의 전 과정을 기록한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의 데모 파일;(4)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로 유통되는 제품과 일치한 전자사진. 앞면사진 한장과 측면 사진 두장을 포함하되 '\*.JPG' 형식으로 통일해야 하며 해상도가1280X720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5)오락게임설비에 사용된 음성파일, 네임리스트와 가사의 전자문서. 전자문서는 오락게임설비에 사용된 모든 배경음악·노래의 네임리스트, 음성파일 및 가사문서이어야 하며 외국어 노래의 경우 반드시 중국어·외국어 대조문서를 제공해야 한다;(6)오락게임 내용 중의 대화, 내레이션, 문자자막 및 조작설명문서. 외국어로 된 경우 중국어·외국어 대조문서를 제공해야 한다;정보망을 통한 다운로드 및 온라인게임 제품·서비스 제공 기능을 갖춘 오락게임설비의 경우 <온라인게임 관리 잠행방법>에 따라 내용심사를 통과하였거나 비안(備案)한 온라인게임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7.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신청 접수 시 신청서류를 점검해야 하며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보충서류 리스트>를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신청서류가 완비된 경우 즉석에서 바로 접수해야 한다.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를 발급해야 하고 전국 문화시장 기술감독 및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문화부에 보고하여 문화부가 통일적으로 사회에 공표하며 공표내용은 오락게임설비의 명칭, 생산업체·유통업체, 비준부서, 비준일자 및 관련 사진과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와 증거를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채택해야 한다.8.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를 취득한 후 국내 시장에서 그 오락게임설비를 판매할 수 있다. 오락게임설비의 규칙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량 또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원(原) 심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다시 보고하여 내용심사를 통과한 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9. 국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자유무역시험구 등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서 생산된 오락게임설비를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내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 시장에서 오락게임설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상무부서에 제출하여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 및 <자동수입허가증>을 지참하여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10.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업체와 오락게임설비용 온라인게임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내부 내용심사제도를 수립하고 심사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여 내용관리 업무에 투입시킴으로써 오락게임설비 내용의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  | **文化部****关于允许内外资企业从事游戏游艺设备生产和销售的通知**文市函〔2015〕576号各省、自治区、直辖市文化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文化广播电视局，西藏自治区、北京市、天津市、上海市、重庆市文化市场（综合）行政执法总队：根据《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的要求，文化部负责将“允许内外资企业从事游戏游艺设备生产和销售，经文化部门内容审核后面向国内市场销售”的改革试点经验，于2015年6月30日前在全国范围内推广。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一、本通知所称游戏游艺设备，是指通过专用设备向消费者提供游戏内容和游戏过程的电子、机械类装置，包括营业场所使用的电子游戏机、与电视接收机设备配套使用的电子游戏机及手持类电子游戏机等，不包含用于出口销售的游戏游艺设备。本通知所称从事游戏游艺设备生产和销售的内外资企业，是指在工商行政部门依法登记，经营范围包括游戏游艺设备生产或者销售并具有独立法人资格的企业。二、鼓励和支持企业研发、生产和销售具有自主知识产权、体现民族精神、内容健康向上的益智类、教育类、体感类、健身类游戏游艺设备。严禁含有《娱乐场所管理条例》第十三条禁止内容的，存在安全隐患的，具有退币、退分、退钢珠等赌博功能的游戏游艺设备面向国内生产和销售。 三、省级文化行政部门负责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工作。各省（区、市）文化行政部门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政府信息公开条例》规定，在行政审批服务大厅及有关政务网站，公布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的法规依据、实施机关、审核条件、审核程序、审核时限、联系方式等信息，并做好政策咨询服务工作。从事游戏游艺机生产和销售的企业应当向所在地省级文化行政部门提出内容审核申请。省级文化行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审核通过的，出具《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批准单》，并报文化部统一向社会公布，具体审核流程依照《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管理办法》（见附件）。已取得《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批准单》的游戏游艺设备可以面向全国销售，异地文化行政部门不再重复审核。省级文化行政部门可以建立由文化、公安等部门、行业专家、协会组成的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专家组，对内容难以界定的，可以由专家组提出审核建议或者报文化部复核，复核时间不计入审核时间。文化部不再分批次发布《游戏游艺机市场准入机型机种指导目录》，原《游戏游艺机市场准入机型机种指导目录》继续有效。四、游戏游艺设备生产和销售企业应当建立内容自审制度，并加强对审核人员的培训。从事游戏游艺设备生产和销售的内外资企业，应当每年向省级文化行政部门报送上一年度的年度报告，内容除向工商行政部门报送的外，还应当包括销售数量。未建立内容自审制度、未按规定履行年度报告义务的，省级文化行政部门可以将其列入文化市场经营异常名录。县级以上文化行政部门、文化市场综合执法机构对于未经内容审核，擅自面向国内销售游戏游艺设备的企业，应当责令改正，未改正的，由省级文化行政部门将其列入文化市场经营异常名录；游戏游艺设备含有《娱乐场所管理条例》第十三条禁止内容的，由省级文化行政部门将其列入文化市场黑名单。五、省级文化行政部门要根据本通知精神，结合本地区本部门实际情况，制定实施方案，建立由文化、工商、公安等部门组成的工作协调机制，做好政策宣传和解读，推进政策落地。实施中遇到的重要情况和问题要及时报告。文化部将适时对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有关政策的落实情况进行督导。特此通知。附件：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管理办法文化部2015年6月24日附件**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管理办法**第一条 为加强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工作，根据《娱乐场所管理条例》、《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等有关规定，制定本办法。第二条 本办法所称游戏游艺设备，是指通过专用设备向消费者提供游戏内容和游戏过程的电子、机械类装置，包括营业场所使用的电子游戏机、与电视接收机设备配套使用的电子游戏机及手持类电子游戏机等，不包含用于出口销售的游戏游艺设备。第三条 鼓励与支持企业研发、生产和销售具有自主知识产权、体现民族精神、内容健康向上的益智类、教育类、体感类、健身类游戏游艺设备。第四条 面向国内生产和销售的游戏游艺设备禁止含有下列内容：（一）违反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二）危害国家统一、主权或者领土完整的；（三）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利益的；（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伤害民族感情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破坏民族团结的；（五）违反国家宗教政策，宣扬邪教、迷信的；（六）宣扬淫秽、赌博、暴力以及与毒品有关的违法犯罪活动，或者教唆犯罪的；（七）违背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八）侮辱、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九）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内容。第五条 面向国内生产和销售的游戏游艺设备的外观、游戏内容、游戏方法说明应当使用我国通用语言文字，不得具有退币、退分、退钢珠等赌博功能。第六条 在国内依法注册，具有独立法人资格的游戏游艺设备生产和销售企业，向所在地省级文化行政部门提出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申请时，应当提交以下材料：（一）《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申请表》；（二）企业营业执照复印件，经营范围应当含有游戏游艺设备生产或者销售；（三）游戏游艺设备内设游戏内容全过程的视频文件或者软件的视频演示（DEMO）文件；（四）能够反映产品整体外观并与实际销售产品一致的电子图片。其中一张正面图，两张侧面图，格式统一为“\*.JPG”，图片分辨率不低于1280X720；（五）游戏游艺设备使用的音频文件、名称列表和歌词的电子文本。电子文本应当是游戏游艺设备中使用的全部背景音乐、歌曲的名称列表、音频文件和歌词文本，如为外文歌曲须提供中外文对照文本；（六）游戏游艺内容中对白、旁白、描述性文字以及操作说明文本，如涉及外文的应当提交中外文对照文本； 游戏游艺设备具备通过信息网络下载和提供网络游戏产品及服务功能的，应当使用按照《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通过内容审查或者备案的网络游戏产品。第七条 省级文化行政部门受理申请时，应当核对申请材料，发现申请材料不齐全的，应当出具《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补充材料清单》，一次性告知申请人；申请材料齐全的，应当当场受理。省级文化行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决定，符合本办法规定的，应当出具《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批准单》，并通过全国文化市场技术监管与服务平台报文化部，由文化部统一向社会公布，公布内容应当包括游戏游艺设备名称、生产和销售企业、批准部门、批准日期及相关图片及说明等；不符合规定的，应当书面说明理由。有异议的，省级文化行政部门应当充分听取当事人的意见，对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进行复核；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或者证据成立的，应予采纳。第八条 从事游戏游艺设备生产和销售的企业取得《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批准单》后，可以向国内市场销售其游戏游艺设备。游戏游艺设备规则和程序需要改进或者系统需要升级的，应当报原审核部门备案；因升级、改版等发生内容实质性变更的，应当重新报省级文化行政部门，经内容审核通过后方可面向国内销售。第九条 在国家批准设立的自由贸易试验区等海关特殊监管区域生产的游戏游艺设备面向国内销售的，内容审核依照本办法执行。游戏游艺设备出区面向国内销售的，应当向商务部门提交《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批准单》及其他相关材料，办理《自动进口许可证》后，持《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批准单》和《自动进口许可证》到海关办理有关手续。第十条 游戏游艺设备生产和销售企业及为游戏游艺设备提供网络游戏产品及服务的企业，应当建立内容自审制度，配备适应审核工作需要的人员负责内容管理工作，保障游戏游艺设备内容的合法性。 |